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56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 추경호·강대식·윤창현

임이자 • 윤영석 • 윤희숙

김정재 · 박덕흠 · 김예지

이종배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8년 「소득세법」 개정으로 개인소장가의 서화·골동품(미술품)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고,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2013. 1. 1.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.

이는 당시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개인소장가의 미술 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,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미술시장과 미술계 종사 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음.

그러나 당시 개정된 법률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 업소득으로 해석될 소지가 발생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.

이에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 등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2008년 「소득세법」 개정 당

시의 국회 입법 논의취지에 맞게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1항제25호).

법률 제 호

#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5호 중 "양도로"를 "양도(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·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기타소득) ① 기타소득은	제21조(기타소득) ①
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	
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	
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	
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	
한다.	
1. ~ 24. (생 략)	1. ~ 24. (현행과 같음)
2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	25
(書畵)·골동품의 <u>양도로</u> 발생	<u>양도(제19조에</u>
하는 소득	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산과
	책임 하에 계속적·반복적으로
	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사
	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	<u>로</u>
26. (생 략)	2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